

의안번호	제 35 호
의결연월일	2003. . .

의결사항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3. 10. 23.

# 사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일자 : 2003. 10. 23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1. 개정이유

-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의 공동주택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
-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기타 사회적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안 별표13 제1호)
- (2)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 시설면적 150㎡당 1대(안 별표13 제2호)
- (3)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안 별표13 제3호)
-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안 별표13 제4호)
- (5)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읍·동지역은 가구당 1대, 면지역은 가구당 0.7대(안 별표13 제5호)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은 50인당 1대(안 별표13 제6호)
- (7)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 250㎡당 1대(안 별표13 제7호)

- 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토록 함(안 별표1 제4호)
- 다. 기타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 보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 3. 법적근거

-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6. 26 ~ 2003. 7. 18(23일간)
    - (나) 예고방법 : 신문게시공고(경남신문) 및 인터넷 게시공고
    - (다) 의견 제출내용 및 반영 :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2003. 7. 25일 제8차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안)

사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를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 중 “ $\frac{36}{\text{도로의 너비}}$  배 이하”를 “ $\frac{36}{\text{도로 너비의 배}}$  이하”로 한다.

제6조본문중 “제3조제3항” 을 “제3조제2항” 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5조의2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하고,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을 “관리지역” 으로 한다.

제22조의제목 및 본문중 “지체부자유자” 를 각각 “장애인” 으로 한다

별표1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한다.

별표11중 “지체부자유자” 를 “장애인”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읍·동지역은 세대당 1대, 면지역은 세대당 0.7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 정원5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부설주차장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p>	<p>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p>
<p>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가. 생략</p> <p>나. 대지의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u>36</u> 배 이하. 다만 배율이 도로의 너비 <u>                    </u> 배 이하.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는 1.8로 한다</p> <p>다. 생략</p>	<p>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p> <p style="text-align: center;"><u>36</u> 이하. ----- <u>도로의 너비의 배</u> ----- -----</p>
<p>제6조(주차전용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주차전용건축물)----- ----- ----- - 제3조제2항-----.</p>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주차장 설치심의 등)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현황</li> <li>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li> <li>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li> </ol>	<p>&lt;삭제&gt;</p>
<p>&lt;신설&gt;</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설치하여야한다.</p>	<p>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 관리지역 ----- ----- ----- ----- ----- ----- ----- -----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제22조(장애인 ----- ----)
①영제6조제1항의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장애인----- -----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장애인--- ----- -----.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장애인--- ----- -----.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표11과 같다.	④장애인----- -----.

# 개 정 전

[별표 1]<개정 99·10·26>

##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단위 : 원)

구 분	주 차 요 금		1일주차권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소 형	500	250	5,000	50,000	45,000
대 형	1,000	500	10,000	100,000	9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2:00  
 나. 11월~3월 09:00~21:30
3. 1구획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7. 시장은 당해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8.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한다.
9. 800씨씨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개 정 후

[별표 1]<개정 99·10·26>

##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단위 : 원)

구 분	주 차 요 금		1일주차권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소 형	500	250	5,000	50,000	45,000
대 형	1,000	500	10,000	100,000	9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2:00  
 나. 11월~3월 09:00~21:30
3. 1구획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7. 시장은 당해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8.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한다.
9. 800씨씨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

# 관계법령 발취

## 1. 주차장법

**第8條 (路上駐車場の 管理)** ①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の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の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3條 (路外駐車場の 管理)** ①路外駐車場은 당해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개정 1999.2.8>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 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2.8>

**第19條 (附設駐車場の 設置)**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の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2002.2.4>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の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2.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1996.6.4]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19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